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상원 의원)

의안 번호	23-103
----------	--------

발의년월일 : 2023. 10. .

발 의 자 :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이상원, 차해영, 한선미,
홍지광

1. 제정이유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반려식물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반려식물을 통한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3. 조 례 안 : 붙임

4. 예산조치 : 붙임

5.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입법예고: 2023. 8. 22. ~ 8.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정서적인 교감을 목적으로 반려식물을 키우며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
2. 반려식물·원에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023년 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

[2024년 예정, 市 반려식물 조례로 근거 신설]

-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시행 '23. 5. 22.)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

2. 비용추계의 전제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담당관 기준]

- 반려식물 구매: 35,000원×보급인원(명)
- 반려식물 교육: 주강사비(150,000원), 보조강사비(80,000원), 1인 재료비 10,000원
- 원예자재 비용: 8,000원×참여인원(명)×교육횟수(강)
- 사무관리비 : 현수막 등 100,000원×10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 시비보조금	38,069	11,597	11,597	11,597	11,597	84,457
	○ 지방교부세	0	7,732	7,732	7,732	7,732	30,928
	소계(a)	38,069	19,329	19,329	19,329	19,329	115,385
세출	○ 물품구매	13,398	5,600	5,600	5,600	5,600	35,798
	○ 교육 용역	21,100	12,320	12,320	12,320	12,320	70,380
	○ 전시회	1,409	1,409	1,409	1,409	1,409	7,045
	소계(b)	35,907	19,329	19,329	19,329	19,329	113,223
□ 총 비용(a-b)		2,162	0	0	0	0	2,162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38,069	11,597	11,597	11,597	11,597	84,457
	시비보조금	38,069	11,597	11,597	11,597	11,597	84,457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합계		38,069	11,597	11,597	11,597	11,597	84,457

5. 1차년도(2023)는 시비 100%로 집행하고, 이후부터는 시비60%, 구비40%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이운혁
연락처	02-3153-854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2023년 상세내역]

1. 반려식물 보급 비용: 반려식물 재료비(35,000원)×대상인원(368명)=12,880천원

2. 교육 프로그램 비용

○ 직접방문 관리비: 25,000원×188명=4,700천원

○ 교육 강사료: 230,000원(주강사150천원+보조강사80천원)×6회×6개 반=8,280천원

○ 프로그램 재료비: 10,000원×180명×6회 = 10,800천원

3. 홍보 등 사업 추진비

○ 현수막 등 1,409천원

[2024년 상세내역]

1. 반려식물 보급 비용: 반려식물 재료비(35,000원)×대상인원(160명)=5,600천원

2. 교육 프로그램 비용

○ 직접방문 관리비: 25,000원×80명=2,000천원

○ 교육 강사료: 230,000원(주강사150천원+보조강사80천원)×6회×4개 반=5,520천원

○ 프로그램 재료비: 10,000원×80명×6회=4,800천원

3. 홍보 등 사업 추진비

○ 현수막 등 1,409천원